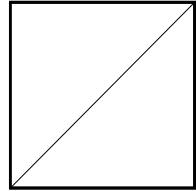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3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2. 28. (임시 제 6 차)

의
결
사
항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연월일	2022. 2. 28.

1. 의결주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장법인 (주)○○○○의 공시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주)○○○○[주선인] 784,300,000원
- 수사기관 통보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별지)

(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784,300,000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 [주선인]
 - 대표이사 : 빙수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x
 - 본점 소재지 : xxx xx xxx xx

□ 조치이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주)○○○○○은 집합투자업자(발행인)가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17.3.9.~'17.3.16.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DB하이브리드 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DLS-파생형]' 및 이와 같은 종류의 증권인 '유진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1호 [DLS-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 합계 55억원을 총 59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등

'17.3.9.~'17.6.22.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DB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
투자신탁제5호[DLS-파생형]' 등 총 63개 펀드("시리즈펀드" 21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2,617억원을 총 2,56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⑯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 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89조(수익증권 등)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리"란 권리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발행인의 명칭
-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29조의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자산운용감독국
연락처	02-2100-2518	02-3145-6725